제 3 2 7 회 정 례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법 령 ·제 도 개 선 건 의 사 항 보고

2024. 11.

관광체육국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(관광체육국)

□ 총 1건 건의

□목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호텔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건의	관광산업과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호텔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건의 (관광산업과, '24.8.29.)	 ● 현황 ○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호텔업계에 대한 근로 불안정성 심화 등으로 근로 기피 - '19년 7월 대비 '24년 7월 숙박업 종사자수 8.4% 감소(한국문화관광연구원, '24.9.) □ 문제점 ○ 호텔·콘도업에 '23.12월부터 E-9(비전문취업비자)가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서울 호텔 종사자는 부족한 상황이며, 특히 객실청소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단순 노무는 인력부족이 심각 ○ 인구감소지역* 대상 F-4(재외동포비자)의 단순노무인력 취업은 허용('23.5.) 되었으나, 서울지역 호텔 객실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에도 서울은 제외됨 * 경기도 가평.연천군, 부산 동구.서구.영도구, 대구 남구 등 9개 시도 28개 지역 - '22년 객실당 0.6명 근무 → '23년 객실당 0.5명 근무(한국호텔업협회,'24.9.) 	(고용노동부, 법무부)
	□ 건의내용 ○ 재외동포(F-4) 비자의 호텔 청소 등 단순노무취업 허용 지역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 □ 관련 규정 ○ 재외동포(F-4)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(붙임 참조)	

□ 재외동포(F-4)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안		
「재외동포(F-4) 지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」	「재외동포(F-4) 지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」		
□ 재외동포(F-4)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	□ 재외동포(F-4)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		
1. 일반 기준	1. 일반 기준		
가.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([붙임 1] 참조)	가.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([붙임 1] 참조)		
2. 예외 기준	2. 예외 기준		
○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	(현행과 같음)		
제23조제3항제1호 관련			
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9호 에			
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			
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・군・구에			
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			
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 활동을			
하는 재외동포(F-4)는 취업활동의 제한을			
받지 않음(다만, 나 목은 제한)			
[붙임1]	[붙임1]		
<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>	<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>		
공공건물, 사무실, 상업건물, 아파트 등의 건물을 청소, 정돈하는 자를 말한다. 【직업 예시】 • 사무실 청소원 • 공공건물 청소원 • 오피스텔 청소원 • 아파트 청소원 • 병원 청소원 • 형원 청소원 • 호텔 청소원	당순 노무 정소 자 원		